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, 이용촉진 및 건전한 육성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○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(안 제6조)

-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 신설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제50조,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94조

○ 예산조치 : 10,230천원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'18. 10. 19. ~ '18. 11. 8.)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【기획감사실-9072(2018.11.12.)】

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【주민복지과-58491(2018.10.22.)】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써

○ 어려운 택시운송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택시요금의 카드결재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통신요금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